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4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서범수・김소희・이헌승

장동혁 • 박정하 • 최보윤

송석준 · 김위상 · 김미애

김희정 · 엄태영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,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,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,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

이를 위해,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,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하여,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 및 제6 조).

아울러,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·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,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48조 및 제80조).

법률 제 호

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, 국방부장관은 위원 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자(이하 "위원 후보자"라 한다)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「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있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시 발주청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48조제1항 중 "설계 업무"를 "설계[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(이하 "건축설계"라 한다)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제2 항 및 제3항에서 같다] 업무"로,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"을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(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)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발주청에 보고하여야한다"를 "발주자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발주청"을 "발주자 및 인·허가기관의 장"으로,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"를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(「건축사법」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같다)와 발주자(인·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발주청은"을 "발주자는"으로 한다.

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 ① ~	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
	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
	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, 국
	<u>방부장관은 위원 또는 위원이</u>
	되고자 하는 자(이하 "위원 후
	보자"라 한다)의 능력과 자질
	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
	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
	인의 동의를 받아 「형의 실효
	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
	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
	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
	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
	<u>수 있다.</u>
제6조(기술자문위원회) ①・②	제6조(기술자문위원회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
	회의 구성 시 발주청은 위원 또
	는 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
	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
	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
	인의 동의를 받아 「형의 실효

제48조(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
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
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
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
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 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<u>발주청에 보고하여야</u>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 토 결과를 보고받은 <u>발주청</u>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<u>건</u> 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

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 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 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48조(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 설계[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계(이하"건축설계" 라 한다)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 함한다.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 서 같다] 업무---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(「건축사법」 제23 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)는 ----------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3) ---------- 발주자 및 <u> 인ㆍ허가기관의 장----- 건</u>

설엔지니어링사업자(「건축사

·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발주철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 제80조(시정명령) (생 략)

<신 설>

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
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. 이
하 이 항에서 같다)와 발주자
(인·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한
경우에 한정한다) 발주
<u>자는</u>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0조(시정명령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 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